
입 법 정 보

2017-5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5
4.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6
5.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7
6.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7
7.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8
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제한 위반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9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9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
1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
14.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3
16.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3
1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4
18.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4
1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5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5
2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6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7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17
2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8
2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18
26.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19
27.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9

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9
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
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20
3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3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33.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3
34.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4
35. 육군 종합행정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5
36. 육군 기계화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5
3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5
38. 육군 공병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7
39.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7
40.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7
41.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7
42.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8
4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8
4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9
45.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금융위원회)	30
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	32
47.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32
4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33
4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3
5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4
5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5
5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36
5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37
5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38
5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39
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40
5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41

5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1
5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2
6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2
6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3
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4
6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44
6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6
6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6
6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7
6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7
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7
69.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9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2. 20. • 마감일자 : 2017. 4. 3.
- 가. 법 제2조제4의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는 규정 신설

2. 점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2. 20. • 마감일자 : 2017. 4. 3.
- 「점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면직 및 해촉기준 마련하기 위함
- ‘점경지역발전기획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함
- 가. 점경지역 현안사항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8조의2, 제9조)
 - 나. ‘점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 다. ‘점경지역발전기획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장을 행정자치부차관에서 국장급으로 하향조정(안 제13조)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2. 20. • 마감일자 : 2017. 3. 13.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 17.3.28.시행)으로 수산생물질병 방역 협의회 설치근거가 삭제되고, 해당 조문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으로 대체됨에 따라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로 대체(안 제6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역협의회 구성, 회의 및 운영 규정 삭제(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4.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 예고일자 : 2017. 2. 20. • 마감일자 : 2017. 4. 3.
- 기상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기상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522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기상사업자는 휴업·폐업 및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 사항을 정하고,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2조의8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을 위해 주민(법인)등록번호 수집하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상사업자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한 절차 마련(안 제2조의 4항)
 - 1) 기상사업자는 기상사업 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법 명시(안 제2조 4항 신설)
 - 2)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2서식 신설)
- 나. 기상사업자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의 신고절차 신설, 행정처분 추가(안 제4조의 2)
 - 1)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의 신고절차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 2)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3서식 신설)
 - 3)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4)
- 다. 주민(법인)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서식 개정(별지 제1호·제4호)

5.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 예고일자 : 2017. 2. 20. • 마감일자 : 2017. 4. 3.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의 기관 명칭을 개정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 개정에 따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 변경,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추가(안 제11조 1,5호 개정, 8, 9호 신설)
 -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과 유통을 위한 사업 조사·분석·개선
 - 2) 날씨 경영(기상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영활동)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11조 8호 신설)
 - 3)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근거 마련(안 11조 9항 신설)

6.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2. 20. • 마감일자 : 2017. 3. 13.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관리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개정에 따라 동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령 제명 및 주요 용어의 변경 :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공통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기탁등록보존기관’, 관할 해역을 ‘관할 수역(내수면 포함)’,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
- 나. 자원 조사·등재, 분석·평가 및 획득허가 등 : 시행령안 제5조~제7조
 - 자원의 조사·등재, 분석·평가 및 외국인 획득허가 등에 대한 세부

- 절차와 방법을 고시 사항에서 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정함
- 다. 책임기관 지정·운영 : 시행령안 제12조, 제13조
- 개정법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책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함에 따라 국립수산 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책임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 기탁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 시행령안 제15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 요건의 주기적인(3년) 점검 등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재지정 절차 규정
- 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시행령안 제29조
-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및 국외반출 승인 등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방청에 위임된 권한 본부로 귀속

7.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2. 20.
 - 마감일자 : 2017. 3. 13.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관리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개정에 따라 동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령 제명 및 주요 용어의 변경 :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공통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기탁등록보존기관’, 관할 해역을 ‘관할 수역(내수면 포함)’,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
- 나. 시행령 위임 세부사항 규정 : 시행규칙안 제3조~제5조, 제9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 목록작성, 등재, 분석·평가, 등급부여 및 분양 승인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

8. 베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제한 위반선박 등에 대한 시범 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2. 21. • 마감일자 : 2017. 3. 3.
-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2. 21. • 마감일자 : 2017. 4. 3.
-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관리비 징수 부과 집행 등과 관련된 분쟁이 많아 집합건물 관리시스템 개선 필요성 대두되어 관리인 선임절차 정비, 임시관리인 제도 신설, 관리인의 보고의무 강화,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수선적립금 제도 신설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울러 집합건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간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완화할 필요가 있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성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등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
- 또한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에 관하여 자치적인 해결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관리인의 분쟁해결 조치권한을 명문화
- 나아가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구분점포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구분점포의 성립을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물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면적 제한규정을 삭제
- 가.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안 제1조의2)
-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집합건물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
- 나. 수선적립금 제도 신설(안 제17조의2)

집합건물 수선 등을 위한 금원이 자의적으로 사용 관리되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결여, 하자보수의 공백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결의로 수선적립금을 징수 적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용목적 귀속 주체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 신설

다.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안 제15조제1항, 제41조제1항)

현행 의결정족수가 과중하여 관리단집회의 의사결정 부재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일부 완화

라. 관리인 제도 개선 (안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고, 나아가 임시관리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등 관리공백 내지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

마. 생활형 분쟁 관련 관리인의 조치 권한 신설 (안 제25조제1항제4호)

집합건물의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에 관하여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생활형 분쟁 관련 중지요청 및 조정 권고 등 조치 권한을 명문화

바. 집합건물 관리단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안 제26조제2항, 제26조의4)

집합건물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에 대해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전산보관도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단 집회 결의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관리단 회계의 투명성 제고

사.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신설(안 제50조의2)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건물 이용 편의 증진

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안 제52조의7)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관련기관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2. 21. • 마감일자 : 2017. 4. 3.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청소년증 분실신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교통카드 선택 항목 신설 등(안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나. 청소년증 뒷면의 기재 내용 간략화(안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 다. 청소년증 분실(절취) 신고 및 서식 신설(안 제3조의2, 안 별지 제5호 서식)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2. 21. • 마감일자 : 2017. 4. 3.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법률 제14447호, 2016.12.20. 공포)으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등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이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를 신설(제17조의2)
 - 가정내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의 사유로 가출하여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회의체에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1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2. 21. • 마감일자 : 2017. 4. 3.
-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화학사고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의 28개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안전관계장관회의

(2016.7.27.), 국가정책조정회의(2016.10.24.)등에서 보고된 후속조치를 위해 즉시신고 위반 삼진아웃제 도입, 가동중지명령 해제 절차 마련,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에 휴식시간 포함 등 현행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합리화하는 등 화관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2. 21. • 마감일자 : 2017. 4. 3.
-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의 마련 등을 화학사고 예방·대응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는 근거와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사업’의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4.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2. 21. • 마감일자 : 2017. 4. 3.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공포(’ 16.2.3, ‘16.8.4 시행, 법률 제13981호)에 따른 잠복결핵감염검진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 규정(안 제6조제3항)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 중 의료비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그 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자 함.
-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제4호)
법률상 결핵검진등 의무기관이 확대(법률 제11조제1항)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에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2. 21. • 마감일자 : 2017. 4. 3.
-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4316호, 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의 수립절차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진료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안 제1조의5)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나. 내성균 관리 전문위원회 구성(안 제7조)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내성균 관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안 제29조 및 별표 2의3)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금 중 진료비의 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진료비 지급 기한은 5년으로 함. 단, 5년 이후 진료비 발생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장애인복지법 외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에 대한 일시 보상금지급 규정을 추가하며, 월실수입액,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망일시보상금을 정하도록 함.

16.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2. 22. • 마감일자 : 2017. 4. 3.
- 가.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의 체결, 유지·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1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22. • 마감일자 : 2017. 4. 3.
- 중앙관서의 장등이 기부 대 양여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재산을 무상 귀속하려는 경우에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변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는 등 국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임.
아울러, 국유재산의 형태·규모 등을 고려한 대부료 감면제도 도입과 대부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임
- 가. 국유재산의 활용도 등을 고려한 감면 제도 도입
 - 나. 국유일반재산의 대부기간 합리화
 - 다. 기부 대 양여 사업시 총괄청 협의 절차 마련
 - 라. 변상금 한도액 상향 조정 및 차등화
 - 마. 행정재산 무상귀속시 총괄청 사전 협의절차 마련

18.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2. 22. • 마감일자 : 2017. 4. 3.
-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대상지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법률 제 14491호, '17.6.28 시행)함에 따라, 시행규칙(환경부령)에 규정된 동일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가. 상위법에 규정된 동일 조문을 삭제
 -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로 함

1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2. 22.
- 마감일자 : 2017. 4. 3.

- 자동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형식승인 대상 장비로 추가하고, 정도검사 기관의 시설 요건 및 합리적인 검사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함.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의 고시와 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및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을 개선하며, 측정대행업체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려는 것임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4. 5.

-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행위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1호, 2016.5.29. 공포)됨에 따라 전문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등 신고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하는 한편, 행위허가 신청 및 허가 통지 등의 세부 절차 등을 포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4. 5.

-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실질적 주체인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고도 지정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1호, 2016.5.29. 공포)됨에 따라, 전문위원 위촉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각 조문에 규정된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고, 허가 신청 절차 및 통지 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문위원 설치 세부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의 위촉 규모 및 대상, 임기, 해촉 사유 및 운영 등 전문위원 설치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 나.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마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 다.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신청 및 착수 등 신고에 관한 절차 마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 행위허가 신청, 허가서 통지,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라.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11조제1항제9호·제2항·제3항·제4항과 제12조 본문 및 단서, 제16조의4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2항 본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종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던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4. 4.
- 시행규칙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매사 시험 응시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명확화 및 업무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를 중도매인뿐 아니라 매매참가인까지 확대하려고 함. 정가·수의 매매 확대를 위해 인하된 시장사용료는 기간만료로 삭제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출 업체 사무실을 부수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함
- 가. 시행규칙 운영상 개설자, 유통관계인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 등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제7호, 제27조의 2제1항, 제39조제2항 및 제5항)
 - 나.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 다.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를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6조제1항제6호)
 - 라. 생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한 경우 인하된 시장 사용료는 기간 만료로 삭제(안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 마. 도매시장에서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업체 사무실을 부수시설에 포함시켜 수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44조제1항 별표2)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4. 4.
- 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수산부류가 아닌 청과부류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현실과 법의 괴리를 막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경매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상위법에 규정 (‘15.6)하여 별도의 시행령 규정이 필요 없어 삭제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할 경우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려고 함

- 가. 수산물 중 물미역·파래 등 해조류는 수산부류가 아닌 청과부류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유통관행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조류를 청과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2조 제2호)
- 나.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위탁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다.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의2)
- 라. 경매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등 조치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15.6)되어 시행령의 중복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조의4)
- 마. 경매사 임면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7조의2제3항)

2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3. 21.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교역량 증가로 외국환거래는 지속 확대되고 국내 금융산업 역시 크게 성장하였음.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외국 환거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바임

2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3. 16.

-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라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소득세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납세자가 원하는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납세의무를 소득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신고서 작성순서에 따라 조문을 배치하는 등 「소득세법」의 체계를 개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26.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3. 16.
-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정비 대상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인세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납세자 입장에서 연관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여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27.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4. 4.
- 5년이상 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에게 전직지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군 복무중 성실 복무 유도
- 가.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에서 ‘5년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확대

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4. 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신청제”와 “추천제”를 병행하고 함.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지정 신청이 없는 제품에 대해 지정 대행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심사 과정 일부

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4. 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신청제”와 “추천제”를 병행하고 함.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지정 신청이 없는 제품에 대해 지정 대행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심사 과정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4. 4.
-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가 중퇴한 경우 부사관, 병 등 현역복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임용요건을 완화하여 전시에 원활한 간호인력의 충원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간 임용 결격사유와 제적 관련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함.
- 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의 현역복무 관련 법적근거 마련(안 제6조제7항제5호)
 - 1)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 중이나, 이들이 중퇴 시 현역복무를 위한 법령이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후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입영절차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가능
 - 2)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가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현역 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
 - 3) 다른 사관학교 생도와의 형평성이 보완되고, 현역복무 절차가 간소화되는 기대효과가 있음.
- 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의 전시 임용 기준 개선(안 제11조제2항제1호, 현행 제11조제2항제3호 삭제)
 - 1)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장교 임용은 간호사 국가시험

에 합격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적시적인 임용이 제한됨.

2)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임용 요건에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

3) 전시 적시적인 간호인력 충원으로 작전지속능력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용 결격사유와 제적 요건에 횡령·배임 및 성폭력범죄 관련 조항 추가 및 신설(안 제10조제2항제6의2 신설, 안 제10조의2 신설, 안 제40조제1항제4호)

1) 국가공무원법은 횡령·배임죄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한 반면 군인사법에는 일부 내용이 미반영됨.

2) 임용 결격사유와 제적 요건에 횡령·배임죄, 성폭력범죄 관련 조항을 추가 및 신설

3) 군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간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 관련 규정을 일치화함으로써 관련 인원의 인사절차상 일관되고 체계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3. 15.

○ 현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업무를 재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미반영 되어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는 등 일선 행정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물류창고업 등록업무 처리자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추가하고, 직제 변경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가.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처리자 범위 확대(안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처리자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추가
나. 직제 개정 내용 반영(안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직제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

3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4. 4.

○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13623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법률 제14543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여성을 위한 복지 확충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도 일부지역을 해제 이전 지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과밀부담금 납부방법 규정 (안 제19조의2 신설)

- 현재는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이 서울특별시 고지서 발부 후 현금으로만 수납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규정함

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안 제17조제3호 개정)

- 저출산 시대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함

다.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권역조정 (안 별표1 개정)

- 당초 성장관리권역이었다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 조정된 영종도 일부지역을 당초대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조정함

33.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4. 4.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 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어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관리하는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를 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변경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 처리기한을 명시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 하려면 그 개시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안 제13조의5)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어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관리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의료기관 기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나 기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및 폐업·휴업의 신고(안 제25조·제26조·제30조)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시·군·구청장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의료법 폐업·휴업시 조치사항(안 제30조의3)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폐업 또는 휴업개시 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게재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함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환자 등에게 개별 통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라. 치과 의사 실기시험 도입(안 별표1의3)

치과 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

도, 기본 기술적 수기를 실기시험과목으로 도입함

34.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2. 23.
- 마감일자 : 2017. 4. 4.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를 정하며, 의사 등은 수술 등에 대해 환자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안 제9조의2·별표1)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와 부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1회, 시험 중에 다른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한 경우,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3회를 적용함

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등(안 제10조의3·제10조의4)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 위탁할 수 있음

위탁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접근을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며, 암호화기술을 적용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및 갱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 까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을 규정함

라.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동의(안 제10조의9·별표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의사 등은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리 고지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등을 한 후 지체없이 고지해야 함

35. 육군 종합행정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24. • 마감일자 : 2017. 3. 16.

○ 육군 병과명칭이 변경(경리·재정, 부관·인사행정, ' 16. 5. 29)이후 수정된 안 된 조항을 개정하고 종합행정학교에서 수행했던 정훈교육이 국방정신전력원으로 이관(' 16. 1. 1)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병과명칭 변경과 정훈교육 관련내용 수정(안 제1조)

36. 육군 기계화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24. • 마감일자 : 2017. 3. 16.

○ 육군 기계화학교령에 타 학교부대령과 다른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항을 '00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라는 표준화시킨 내용으로 개정 하려는 것임

○ 가. 타 학교부대령과 상이한 내용의 개정

3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2. 24. • 마감일자 : 2017. 4. 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53호, 2016.7.31. 공포, 2016.8.1. 시행) 및 하위법령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금융회사 등에게 과

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일부 법조항의 해석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당초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규제 사각지대가 일부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 임원의 자격요건 명확화(안 제7조)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의 의미를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명확화

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안 제9조)

금융회사의 인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면하여야 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를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각 분야의 “최고” 업무집행책임자 1인으로 축소

다. 겸직 승인 및 보고(안 제11조)

겸직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기존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더하여 사내이사를 추가하고, 겸직 보고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기존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에 비상근감사를 추가함으로써 겸직 승인 및 보고와 관련하여 임원의 종류별로 일관성을 부여

라. 보수체계의 마련 등(안 제17조)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여야 하는 직원의 범위를 단기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단기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담당업무 경상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성과보수의 100분의 40이상을 이연지급하도록 이연지급 의무 비율을 명확화

마.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안 제23조)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중 금융유관협회에 7년 이상 종사한 자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과 마찬가지로 위험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도록 함

바. 겸직 금지 등(안 제24조)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면서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겸영

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동일인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함

38. 육군 공병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24. • 마감일자 : 2017. 3. 16.
- 육군 공병학교령에 타 학교부대령에 없는 학교장 직무대리 조항을 삭제하고 타 학교부대령과 다른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항을 ‘00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라는 표준화시킨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39.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24. • 마감일자 : 2017. 3. 16.
- 해병대사령부에 의무실을 신설하고, 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하는 등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40.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24. • 마감일자 : 2017. 3. 16.
- 공군본부의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정책실을 신설하고, 현재 수행하는 임무·기능에 부합하도록 참모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41.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24. • 마감일자 : 2017. 3. 16.
- 해군본부의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정책실을 신설하고, 현재 수행하는 임무·기능에 부합하도록 참모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42.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2. 24. • 마감일자 : 2017. 3. 16.
- 육군본부의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정책실을 신설하고, 현재 수행하는 임무·기능에 부합하도록 참모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4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2. 24. • 마감일자 : 2017. 4. 5.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정책개선권고’ 이외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석평가 실무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평가기관 지정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4443호, ’ 16.12.20. 공포, ’ 17.6.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성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성을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단위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도 대상사업에 포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 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표명제도 신설에 따른 해당 조항 개정(안 제8조 제목 및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 신설)
- 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을 보좌하는 실무담당자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12조 제3항 신설)
- 라. 법률로 상향 규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

제(안 제14조 제1항 삭제)

4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2. 27.
- 마감일자 : 2017. 4. 10.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38호, 2015.7.24. 공포, 2016.1.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안전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안 제4조의2 신설)

※ 현행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신설

1) 소방체험관은 국민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방체험관장 등 운영요원을 두어야 함.

2) 소방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소방교육·훈련의 실시 등(제9조 개정 및 별표 3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육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육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4) 소방안전교육 시설 및 장비, 강사의 자격,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2로 정함.

45.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2. 27.
- 마감일자 : 2017. 4. 10.

○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 정보의 보고, 금리의 공시 및 지표금리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규율을 정립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정의(안 제2조)

단기금융거래를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에 해당하는 만기 1년 이상의 금융거래로 명확히 정의하고, 콜거래 등 각각의 단기금융거래의 거래 유형과 지표금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

나.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및 행위규제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22조·제24조,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금융회사 등 간의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게 하고 이러한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는 등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행위규제, 검사·제재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다.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자금중개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등으로 하여금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하고, 그 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고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개별 금융회사 및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공시(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예탁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함),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등으로 하여금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및 매매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거래 금리 및 호가 금리를 공시토록 하는 한편, 그 공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금리가 충분하고 신속하게 시장참여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마. 관리대상 지표금리(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금융위원회는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용되는 지표금리 등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지표금리를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지표금리 산출에 필요한 정보 또는 금융상품을 의무적으로 제출 또는 발행하게 하는 등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표금리의 산출 중단 등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바. 단기금융거래의 위험관리 및 자료 제출 요구(안 제20조·제21조)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콜거래 한도,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의 담보 비율의 제한 등 단기금융거래의 유동성 위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만기 1년 초과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검사·제재 등(안 제23조, 제25부터 제27조까지)

금융감독원의 장으로 하여금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등의 이 법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7. 2. 28. • 마감일자 : 2017. 4. 10.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에의 통합을 적극 지원해나가기 위한 것임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개편(안 제6조)
 - 심의사항으로 탈북민이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탈북민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 위원장을 통일부차관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
- 지역적응센터를 지역통합지원센터로 개편(안 제15조의2)
 - 지역적응센터의 명칭을 지역통합지원센터로 변경
 - 지역주민과의 소통·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임무로 명시
-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제17조의2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9조)

47.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2. 28. • 마감일자 : 2017. 3. 10.
-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완화하여 고교 졸업예정자의 직업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말산업 분야 교육 이수자에게 혜택 부여하고 승마시설 최초 신고 시와 변경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차등을 둬으로써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응시 자격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완화(별표 1)함

4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2. 28. • 마감일자 : 2017. 4. 10.
-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실시,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 교환 지원, 보험가입촉진 계획 수립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개정('16.12.2. 공포, ' 17.6.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등(안 제12조제2항,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기술 정보교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나. 통계의 수집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안 제21조제1항)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추가
- 다.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안 제22조의4)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 촉진을 위하여 전년도 성과분석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험상품 운영현황, 교육 및 홍보 계획, 보험상품 개선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라.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9조, 제14조, 별표 3)

4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2. 28. • 마감일자 : 2017. 3. 6.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손해배상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사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사자 특정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 필요함.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의 알선 및 소송 지원을 신청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자료 처리 가능

5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2. 28. • 마감일자 : 2017. 4. 10.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복구설계서를 포함 제출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복구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예치할 수 있는 증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지목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제출서류 개선(안 제10조, 제15조의3, 별표3호 서식등 개정)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 복구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제출 서류 개선

-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 납부시 제출 가능한 지급보증서의 보완(안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시 제출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시 이행담보금 확보가 가능한 증권으로 개선

- 다. 송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 개선(안 별표1의4)

송전시설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시설로 면적에 관계없이 10년 이내에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안 부칙 제3조)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신고서 첨부서류에 분할측량성과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5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2. 28.
- 마감일자 : 2017. 4. 10.

○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산지에 포함되도록 하고, 산지에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여 임산물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4361호, 2016.12.02. 공포, 2017.06.03. 시행)됨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정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임산물과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 임시특례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를 정하고자 함(안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 지목이 도로인 경우와 지목이 임야이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하는 등 명확히 함

나. 임산물을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받지 않고 임산물 재배를 위하여 절토·성토 등을 통하여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가 가능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임산물 소득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 함

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수료를 납부한 이후 조사에 착수를 하는데 조사 착수전에 최대 28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위한 기간을 수수료 납부 일로부터 산정하도록 함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자료중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정함(안 제20

조의5)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통보 후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와 각종 조사야장들과 분석조사서 등의 서류를 3년의 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함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른 기준을 정함 (안 제26조의2)

산지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하여 용도변경승인기간동안 용도변경승인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바.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0조의2)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및 중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사. 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협의 및 산지전용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 및 위임범위 명확화(안 제6조, 제15조, 제52조)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대한 변경협의의 경우 실제 변경되는 면적에 따라 권한을 이양하거나 위임하고,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허가권자에게 권한을 이양 및 위임토록 함

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기준 마련(안 부칙 제3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신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5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2. 28 • 마감일자 : 2017. 4. 10.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등록이후 최초년도에 관련 법률의 내용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연 10 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영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5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2. 28.
- 마감일자 : 2017. 4. 10.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 등을 폐업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시군구의 인·허가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등 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신청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노래연습장 내 청소년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투명유리창 설치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
- 폐업신고 합리화 관련 : 제13조 제2항, 제3항 신설
세무서, 시·군·구 중 민원인이 한 곳 방문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 가능토록 개정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과 노래연습장업을 폐업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신고·등록 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3조 제2항 신설)
 -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시·군·구로 송부된 폐업신고서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접수한 날짜에 시·군·구에 접수한 것과 동일하게 폐업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는 근거 마련(제13조 제3항 신설)
- 청소년실 추가설치 등 시설기준 관련 : 별표 1 개정
- 영업주나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등 청소년실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장치설치 시 청소년실 추가설치 허용
-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별표 2 개정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중 마이크 이외의 시설이 시설기준 위반 시 1차 위반한 때부터 영업정지 10일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

5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2. 28. • 마감일자 : 2017. 4. 10.

○ 수중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43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관리, 수중레저교육자의 교육, 수중레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종사자 교육 등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야간안전관리(안 제4조)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단독으로 입수하지 않으며 수중레저기구에 탐조등(서치라이트)을 구비하도록 하고 원거리의 경우 사전에 신고한 예정귀환시간을 준수토록 규정함.

나.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등(안 제7조)

법 제11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중 수중레저교육자의 배치 및 탑승에 관한 사항은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용하며 수중레저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치들을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생략 가능토록 규정함.

다.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안 제8조)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식 교육 표준 및 지침(또는 그에 갈음하는 단체 등의 표준 및 지침)에 근거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및 인정단체는 교육 실적 등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토록 규정함.

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안 제10조)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 요건을 별표로 정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 실태를 조사하여 1년 이상(사업기간 내 계절적 휴업 미 포함) 휴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함.

다. 종사자 교육 등(안 제12조)

법 제20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인정단체가 실시하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응급조치 또는 품질 등에 관한 교육 연수를 격년으로 실시토록 하며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종사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5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2. 28. • 마감일자 : 2017. 4. 10.

○ 수중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43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사업의 범위,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절차, 안전점검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중레저활동의 범위(안 제2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의 범위를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으로 규정함.

나. 수중레저사업의 범위(안 제6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범위를 대여, 운송, 교육사업 및 종합사업으로 규정함.

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법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토록 규정함.

라. 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안 제9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인명·선박 구조선박, 군사작전 수행 또는 해상치안 목적의 선박)은 경적을 울리고 식별표시를 살피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수중레저활동자와 접촉한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

마. 안전점검의 기준·절차 등(안 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동 법에 따라 타 기관의 안전점검이 이뤄진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토록 규정함.

바. 원거리 및 수중사고의 신고(안 제12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시 활동자의 신상정보, 활동구역, 이동거리 및 예정귀환시간 등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하고, 수중사고 발생 시에도 조난자의 신원, 위치, 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규정함.

사. 과징금(안 제14조, 제15조)

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심한 불편을 야기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0만원, 2개월은 500만원, 3개월은 7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며 사업자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이 가능토록 규정함.

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7. 2. 28. • 마감일자 : 2017. 4. 10.
- 북한이탈주민 대상 임대보증금 지급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지급하던 것을 거주지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난 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신청을 위해 통일부에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등본 대신 초본을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당사

자 이외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시점 변경(안 제4조제2항)

종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주거지원금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거주지 전입 이후 2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5)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 아닌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5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통일부)

• 예고일자 : 2017. 2. 28. • 마감일자 : 2017. 4. 10.

○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에 지급하는 보로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기초생활보장법 체계가 종래 일원화된 수급권자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으로 각 급여별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변화된 기초생활보장법 체계에 맞게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지급 사유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 보로금의 지급 한도 상향조정(안 제40조)

보로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2.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

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상황을 반영하여 자산형성제도 지급요건 정비(안 제40조의2)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일 경우 자산형성제도를 통해 형성한 지원금의 미지급 사유로 규정하였던 것을 생계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만 미지급 사유로 규정

5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2. • 마감일자 : 2017. 4. 1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수욕장

- 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사항 반영(안 제13조)
- 나.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려야 할 안전정보의 내용, 방법, 시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5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2. • 마감일자 : 2017. 4. 1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수욕장 피서용품 대여영업자의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정당한 자기소유 피서용품 방해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6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3. 2. • 마감일자 : 2017. 3. 6.
- 화학물질·제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인력 및 경유차 배출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실도로 검사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화학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등 현안 해결, 환경매체융합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0. 0. 공포, 2017. 0.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경부에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도록 함(안 제7조 제7항, 별표 21)

나.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제도로주행 검사 인력 9명(연구관 2명, 연구사 9명)을 증원하도록 함(별표 8)

다. 환경부 조직 재정비(제3조의2, 제4조, 제7조, 제9조 개정 및 제7조의2 신설)

1) 환경정책관을 폐지하고, 기후미래정책국을 신설하며, 소관과로 기후미래전략과(기존 정책총괄과), 환경기술산업과(기존 환경산업과), 국제협력과(기존 해외협력담당관), 지구환경협력과(기존 환경 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둠

2) 국제협력관을 폐지하고, 환경융합정책관을 신설하며, 소관과로 국토환경정책과, 통합허가제도과, 환경경제통계과(기존 환경기술경제과), 국토환경평가과, 환경감시팀을 둠

3) 환경정책실 내 기후대기정책관을 대기환경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소관과로 대기환경정책과(기존 기후대기정책과), 청정대기기획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를 둠

4) 자연보전국 내 국토환경정책과 및 국토환경평가과를 환경융합정책관으로 이관하고, 소관과로 자연 생태정책과(기존 자연정책과), 생물다양성과, 자연공원과(기존 공원생태과), 생태서비스진흥과를 둠

6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3. 2. • 마감일자 : 2017. 3. 6.

- 현재 고용보험법은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나 상한액은 정액이어서 상당기간 상한액은 고정되고 하한액만 상승*하게 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9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규정

-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8만 6천원에서 10

만원으로 상향(시행령 제68조제1항)

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3. 2. • 마감일자 : 2017. 4. 11.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방법을 정하고, 고용부담금 과오납 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환급금의 이자율 적용기간 및 적용근거 등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기준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장애인 기준에 추가함(안 제3조)
-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5)
- 다.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용부담금 과오납 시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급하는 경우 이자율 적용기간 및 이자율 적용 근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 라. 고용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 등 납부대행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의2)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두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지원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79조의2)

6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3. 2. • 마감일자 : 2017. 4. 11.
-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통행가능한 차종이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워 대형 저속 차종은 우측 부분의 차로, 소형 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으로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해당 차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체 시에도 1차로를 통행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속도가 도로의 최고속도 이하인 경우에는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교통소양교육 대상자가 감소하여 교육 횟수가 줄어들어 따라 교육을 희망하는 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소양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찰청 공고 제2017-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고안(2016. 1. 6 ~ 2. 15, 40일간 실시) 중 교통소양교육을 통합하고 교육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내용과 관련, 국민들이 바뀐 교육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에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중대한 내용 변경은 없음

○ 가.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고속도로 1차로의 통행기준 완화 (안 별표 9)

1) 2차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경우 대형 및 저속 차종의 경우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소형 및 고속 차종의 경우 모든 차로로 통행 가능하도록 함.

2) 고속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1차로(2차로가 통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에서 최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된 자 이외의 교통소양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6시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교육 내용을 운전 유형 진단 교육 등 자기 주도적 교육 위주로 구성함(안 별표16 제2호 나목).

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90호 서식).

6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2. • 마감일자 : 2017. 4. 11.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 14537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조정하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근거조항마련 등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537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 (안 제5조제2항 신설)
- 나. 소음대책사업 중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 확대에 따른 해당 개월 조정(안 제6조제1항)
- 다.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6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2. • 마감일자 : 2017. 4. 11.
-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시행령으로 개정(시행 '17.3.30)됨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537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음대책사업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기간을 하절기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안 제3조제1항 제5호)
- 나. 소음대책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을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 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 (안 제12조 제2항 신설).

6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2. • 마감일자 : 2017. 4. 1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사항 반영(안 제13조)
- 나.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려야 할 안전정보의 내용, 방법, 시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6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2. • 마감일자 : 2017. 4. 1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수욕장 피서용품 대여영업자의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정당한 자기소유 피서용품 방해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6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3. 2. • 마감일자 : 2017. 3. 6.

- 화학물질·제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조직·인력 및 경유차 배출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실도로 검사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화학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등 현안 해결, 환경매체융합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0. 0. 공포, 2017. 0.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경부에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도록 함(안 제7조 제7항, 별표 21)
- 나.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제도로주행 검사 인력 9명(연구관 2명, 연구사 9명)을 증원하도록 함(별표 8)
- 다. 환경부 조직 재정비(제3조의2, 제4조, 제7조, 제9조 개정 및 제7조의2 신설)
 - 1) 환경정책관을 폐지하고, 기후미래정책국을 신설하며, 소관과로 기후미래전략과(기존 정책총괄과), 환경기술산업과(기존 환경산업과), 국제협력과(기존 해외협력담당관), 지구환경협력과(기존 환경 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둠
 - 2) 국제협력관을 폐지하고, 환경융합정책관을 신설하며, 소관과로 국토환경정책과, 통합허가제도과, 환경경제통계과(기존 환경기술경제과), 국토환경평가과, 환경감시팀을 둠
 - 3) 환경정책실 내 기후대기정책관을 대기환경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소관과로 대기환경정책과(기존 기후대기정책과), 청정대기기획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를 둠
 - 4) 자연보전국 내 국토환경정책과 및 국토환경평가과를 환경융합정책관으로 이관하고, 소관과로 자연 생태정책과(기존 자연정책과), 생물다양성과, 자연공원과(기존 공원생태과), 생태서비스진흥과를 둠

69.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3. 2.
- 마감일자 : 2017. 3. 6.

○ 현재 고용보험법은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나 상한액은 정액이어서 상당기간 상한액은 고정되고 하한액만 상승*하게 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9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규정